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3. 31.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3. 13.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104호)
- 나. 회부일자: 2023. 3.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남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우리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3. 5. 31.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89-6
 - 규모 : 대지 257㎡, 연면적 477.80㎡ (지하1층/지상3층)

- 위탁기간 : 2023. 6. 1. ~ 2026. 5. 31.(3년)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 수탁기관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 위탁사무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청소년 문화공간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 선정방법: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이하 “누림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3.05.31.자로 “누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체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임. 위탁대상 현황 및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음.

<장위청소년문화누리센터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시설현황	소요예산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조직
장위청소년 문화누리센터	- 위치 : 성북구 장월로 89-6 - 규모 : 477.80㎡ (지하1층/지상3층)	379,271천원 (구비)	2020.6.1. ~ 2023.5.31. (3년)	(사)한국청소년 한마음연맹 (센터장 : 김상찬)	총 4명 - 센터장 1 - 직 원 3

<시설현황>

층 별	주요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상3층(93.01㎡)	우리누리(청소년 자치공간)	청소년 파티룸, 요리체험,
지상2층(132.09㎡)	사무실, PC검색대, 다다누리(청소년 학습공간)	청소년 프로그램, 학습활동
지상1층(114.98㎡)	아미누리(청소년 카페)	보드게임, 다트, 커뮤니티 활동 등 자유공간
지하1층(137.72㎡)	라운누리, 헤유투리(청소년 활동공간)	VR체험, 홀로그램, 1인미디어, 댄스연습

<운영실적>

연도	이용자 현황		운영 프로그램 현황	
	전체 이용자수	청소년 비율	세부 프로그램 수	참여인원
2020년	983명	73%	7	390명
2021년	10,691명	86.3%	29	6,132명
2022년	17,553명	84%	35	11,519명

다. 민간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¹⁾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²⁾규정에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 위탁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³⁾에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추진은 가능할 것이며, “누림센터”의 재계약을 위해 실시한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평균 87.5점으로 준수한 편으로 위탁사무의 수행을 무리없이 수행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성과평가 결과>

연번	평가영역	배점	점수	연번	평가영역	배점	점수
1	운영 및 관리	11	10.4	5	시설기준 및 안전	20	18.9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4	12.2	6	대외협력 및 홍보	5	4.3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20	12.8	7	종합 평가	10	9.5
4	인사 및 조직	20	19.4	총점		100	87.5

- 1)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사무의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31.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3. 17. 경수현 의원 외 12명 발의 (의안번호 108호)
- 나. 회부일자: 2023. 3.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3. 2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수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에서 ‘보유’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로 전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본 조례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가치 재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한다. 또한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을 추가하여 센터의 직업훈련교육 기능 및 시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정당성을 갖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조례의 조문 전체)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함(안 제5조)
-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안 제8조제4호)
-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간 : 2023. 3. 17. ~ 2023. 3. 22.
 - 의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조례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최근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에서 ‘경력보유’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로 전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을 추가하여 센터의 직업훈련교육 기능 및 시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조례 내 전체적(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1호)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경력이 단절된 상태’로 보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경력보유’로 잠재적 의미를 전환하여 여성 고용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

이와 관련하여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2020.11.4. 시행)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고 뒤이어 안양시와 경기도가 조례⁴⁾를 전부개정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2021)는 경력단절 여성을 성차별적 용어로 선정⁵⁾한 바 있음.

- 안 제8조제4호는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보유 유지’로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이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관점을 개선하고자 수정한 것이며, 안 제9조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직업훈련교육 등 경력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조치로 보임.
- 그 밖의 안 제1조 및 안 제5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인용 법령을 삭제 및 변경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육아돌봄 등의 이유로 일을 중단함으로써 경력이 단절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개선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가치를

4)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22. 10. 20. 시행)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23. 3. 6. 시행)

5)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2021. 보고서 47~48페이지)에서 성차별적 용어로 선정 이유 :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와 여성이라는 용어를 결합시킨 차별적 용어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용어로 선정함.

재정립하고, 경력보유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